

# 푸르덴셜알파채권 혼합투자신탁1호

## 투 자 설 명 서

이 투자설명서는 "푸르덴셜알파채권혼합투자신탁1호"에 대한 투자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간접투자 자산 운용업법」에 의거하여 푸르덴셜자산운용주식회사가 작성한 자료입니다. 이 투자설명서는 당해 투자신탁의 투자에 따른 위험, 주된 투자대상 자산의 종류, 투자방침, 가입방법, 투자금 회수 방법, 관련 보수 및 수수료, 과세 등에 대한 중요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투자자들은 가입하시기 전에 반드시 이 투자설명서를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 푸르덴셜알파채권혼합투자신탁 1호

1. 투자신탁명	푸르덴셜알파채권혼합투자신탁1호
2. 자산운용회사명	푸르덴셜자산운용주식회사
3. 판매회사명 및 상담가능 전화번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푸르덴셜투자증권 (Tel. 1588-4588, <a href="http://www.pru.co.kr">www.pru.co.kr</a>)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838번지</li> <li>• 우리투자증권 (Tel: 1544-0000, <a href="http://www.wooriwm.com">www.wooriwm.com</a>)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23-4</li> <li>• 하나은행 (Tel: 1588-1111, <a href="http://www.hanabank.com">www.hanabank.com</a>) 서울시 중구 을지로1가 101-1</li> <li>• 굿모닝신한증권 (Tel: 1600-0119, <a href="http://www.goodi.com/ir">www.goodi.com/ir</a>)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23-2</li> <li>• 대신증권 (Tel: 1588-4488, <a href="http://www.daishin.co.kr">www.daishin.co.kr</a>)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34-8</li> <li>• 제주은행 (Tel. 1588-0079, <a href="http://www.e-jejubank.com">www.e-jejubank.com</a>) 제주도 제주시 이도1동 1349</li> </ul> <p>※판매회사는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에 의거하여 제정된 판매행위준칙 등을 준수하여야 합니다</p> <p>※판매회사는 수익증권의 판매업무 만을 영위할 뿐 투자신탁의 운용과는 무관하며, 투자자의 이익을 보장하거나 손실을 보전하지 않습니다.</p>
5. 작성기준일	2008년 5월 6일
6. 투자설명서 비치 공시 장소 및 인터넷 게시주소	판매회사 본·지점 및 인터넷 홈페이지, 자산운용회사 인터넷 홈페이지( <a href="http://www.prudentialfund.com">www.prudentialfund.com</a> ), 자산운용협회 인터넷 홈페이지( <a href="http://www.amak.or.kr">www.amak.or.kr</a> )

금융위원회는 투자신탁 수익증권의 발행을 승인하거나 투자설명서 내용의 정확성 및 적정성을 보증하지 않습니다. 또한 투자신탁 수익증권은 「예금자보호법」에 의한 보호를 받지 않는 실적배당 상품으로 투자원금의 손실이 발생할 수도 있으므로 투자에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목차 CONTENTS

**요약(핵심설명서) : 이 펀드의 주요 특징만을 파악하고 싶다면?**

**제1부 투자신탁의 기본정보 : 이 펀드의 기본정보를 알고 싶다면?**

1. 투자신탁의 개요  
명칭, 상품의 존속기간, 투자신탁유형, 자산운용회사, 최초설정일 등 연혁, 수탁고 추이, 해지사유
2. 투자정보  
투자목적, 주요 투자전략, 주요 투자위험, 투자위험에 적합한 투자자 유형, 기준가격, 운용전문인력, 투자실적(연도별 수익률 추이, 연평균 수익률)
3. 수수료 보수, 과세  
수익자에게 직접 부과되는 수수료, 투자신탁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 투자소득에 대한 과세
4. 수익증권의 매입 환매, 분배  
매입, 환매, 이익 등의 분배

**제2부 투자신탁의 상세정보 : 이 펀드를 상세하게 알고 싶다면?**

1. 투자전략 및 투자위험 등  
투자전략, 투자위험, 투자대상, 투자제한
2. 자산의 평가  
자산의 평가
3. 투자증권 및 장내파생상품 거래시 중개회사 선정기준  
투자증권 및 장내파생상품 거래시 중개회사 선정기준
4. 수익증권의 매입 환매 및 이익 등의 분배관련 유의사항  
수익증권의 매입관련 유의사항, 수익증권의 환매관련 유의사항, 이익 등의 분배관련 유의사항

**제3부 자산운용회사 및 투자신탁의 관계인에 관한 사항 : 이 펀드의 운용회사, 판매회사, 수탁회사, 일반사무관리회사, 채권평가회사를 알고 싶다면?**

1. 자산운용회사  
회사 개요, 주요업무, 최근 2개 사업연도 요약 재무내용, 운용자산규모, 운용전문인력관련 사항
2. 판매회사  
회사 개요, 주요업무
3. 수탁회사  
회사 개요, 주요업무
4. 일반사무관리회사  
회사 개요, 주요업무
5. 채권평가회사  
회사 개요, 주요업무

**제4부 수익자의 권리 및 공시에 관한 사항 : 투자자의 권리와 공시제도에 대해 알고 싶다면?**

1. 수익자의 권리  
수익자 총회 및 의결권, 잔여재산분배, 장부 서류의 열람 및 등 초본 교부청구권, 손해배상책임, 재판관할, 기타 수익자의 권리보호에 관한 사항
2. 공시  
정기공시 및 보고서, 수시공시

**<참고> 용어 정리 : 투자설명서에 나온 용어가 너무 어려워요**

<참고> 펀드 용어 정리

**핵심설명서**



**요약(핵심설명서)**

**I. 투자신탁의 개요 (☞ 본문 1 쪽)**

1. 명칭	푸르덴셜알파채권혼합투자신탁1호 (자산운용협회 펀드코드: 종류A 68752, 종류C 68753)
2. 펀드존속기간	추가형이어서 별도의 종료일이 없습니다.
3. 분류	증권간접투자기구(혼합형), 추가형, 개방형, 종류형
4. 자산운용회사	푸르덴셜자산운용주식회사

**II. 투자정보 (☞ 본문 2~7 쪽)**

1. 투자목적	- 이 투자신탁은 국공채 및 투자등급 회사채 등에 투자하여 안정적인 수익을 추구함과 동시에 금융공학을 활용하여 국내 주식 및 주가지수선물에 투자함으로써 채권수익 플러스 알파의 수익을 달성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그러나 <b>이 투자신탁의 투자목적이 반드시 달성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b> * 비교지수: KIS-Reuter 종합1년미만x30%+매경BP CDx70% (비교지수는 자산운용회사 인터넷 홈페이지( <a href="http://www.prudentialfund.com">www.prudentialfund.com</a> ))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2. 주요 투자전략	- 이 투자신탁은 투자신탁 재산의 40%이상을 국채, 통안채, 회사채 등에 투자하며 주식에 30%이하 범위에서 투자합니다. *주식에의 투자 비중은 금융 공학적 산식(수익 민감도)에 의하여 산출된 비율에 의하여 장중 혹은 장종가에 따라 결정합니다.
3. 주요 투자위험	- 「 <b>예금자보호법</b> 」의 보호를 받지 않는 실적배당상품으로 주식 및 채권 등의 가격변동 등에 따라 <b>투자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b> - 투자위험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투자설명서 본문 참조
4. 투자위험에 적합한 투자자 유형	- 이 투자신탁의 <b>투자위험은 5 등급 중 3 등급</b> 에 해당하는 보통수준의 투자위험을 지니고 있습니다. 따라서 보통 수준의 투자수익 추구하고 보통 수준의 투자위험을 감내할 수 있는 투자자에게 적합합니다.
5. 기준가격	- 간접투자기구(펀드)의 <b>매입·환매 및 분배시 적용되는 가격</b> 으로 투자신탁의 순자산가치를 발행 수익증권 총수로 나누어 매일 산출 * 판매회사 영업점 또는 자산운용회사 인터넷 홈페이지( <a href="http://www.prudentialfund.com">www.prudentialfund.com</a> ))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6. 운용전문인력**

성명	나이	직위	운용현황		주요 운용경력
			운용중인 펀드수	운용중인 자산규모	
김범희	47	그룹장	11	6,078 억	파생상품운용 - 현대투자신탁증권(11년 9개월) - 푸르덴셜자산운용(8년 4개월)

※이 펀드의 운용은 AI 팀에서 담당하며, 상기인은 이 팀을 총괄하는 **책임운용전문인력**입니다.

**7. 투자실적 추이(연평균 수익률): 과거성적을 나타낼뿐 미래의 운용성적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기간	설정일이후
	07-05-10~08-02-11
투자신탁	5.80%
비교지수	5.46%

\* 비교지수 : KIS-Reuter 종합 1년미만 x30%+매경 BP CDx70%

\* 상기 수익률은 종류 A를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 다른 종류형 수익증권의 투자실적은 본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III. **매입·환매 관련 정보 (☞ 본문 7~12 쪽)**

1. 수수료 및 보수

구분		지급비율			지급시기
종류		종류 A	종류 C	종류 I	
수익증권 판매 기준		제한 없음			50 억 이상
수익자 에게 직접 부담되는 수수료	선취 판매수수료 <sup>주1)</sup>	납입금액의 0.7%	-	-	수익증권 매입시
	후취 판매수수료	-	-	-	-
	<b>환매수수료<sup>주1)</sup></b>	-	<b>90 일미만 이익금의 70%</b>		환매시
투자신탁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	자산운용회사 보수	연 0.44%	연 0.44%	연 0.44%	분기별 후급
	판매회사 보수	연 0.31%	연 1.01%	연 0.31%	
	수탁회사 보수	연 0.03%	연 0.03%	연 0.03%	
	일반사무관리회사 보수	연 0.02%	연 0.02%	연 0.02%	
	<b>보수 합계</b>	<b>연 0.80%</b>	<b>연 1.50%</b>	<b>연 0.80%</b>	
	기타 비용	실비	실비	실비	수시 발생
	<b>총 보수·비용비율<sup>주2)</sup></b>	<b>연 0.80% + 실비</b>	<b>연 1.50% + 실비</b>	<b>연 0.80% + 실비</b>	

주 1) 선취판매수수료는 매입시점에서, 환매수수료는 90 일 미만 환매시 일회적으로 부과

주 2) 총보수·비용비율은 투자자가 실질적으로 부담하는 전체적인 보수·비용수준을 나타냄

2. 과세: 수익자는 국내외상장주식 등의 매매·평가손익을 제외한 과세소득에 대하여 소득세 등(2008. 05. 현재 개인 15.4%, 법인 14.0%)을 부담합니다.-세부사항은 본문 참조 요함

3. 매입·환매 절차 등

이 수익증권의 매입·환매는 판매회사의 영업시간(오전 9 시 30 분~오후 5 시) 중에 매입 또는 환매할 수 있습니다.

구분	오후 5 시 이전	오후 5 시 이후
매입	<p>- 자금을 납입한 영업일(D)의 <b>다음 영업일(D+1)</b>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을 적용</p> 	<p>- 자금을 납입한 영업일(D)로부터 <b>제3영업일(D+2)</b>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을 적용</p> 
환매	<p>- 환매청구일(D)로부터 <b>제3 영업일(D+2)</b>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을 적용</p> <p>- <b>제4 영업일(D+3)</b>에 환매대금을 지급</p> 	<p>- 환매청구일(D)로부터 <b>제4 영업일(D+3)</b>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을 적용</p> <p>- <b>제5 영업일(D+4)</b>에 환매대금을 지급</p> 

※ 의문사항 또는 불편사항(민원)이 있는 경우 판매회사의 상담센터(1588-4588)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www.pru.co.kr)를 통해 문의하거나 금융감독원(국번없이 1332)에 도움을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요약(핵심설명서)’은 투자설명서의 주요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투자신탁의 투자목적, 투자위험 등에 대한 상세한 정보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투자설명서 본문을 읽어보셔야 합니다.

(판매회사) \_\_\_\_\_ (점포명) \_\_\_\_\_ (판매직원/취득권유인 직위 및 성명) \_\_\_\_\_ (은)는 (고객 성명) \_\_\_\_\_ 에게 투자설명서를 제공하고 그 주요내용을 설명하였습니다.

200 .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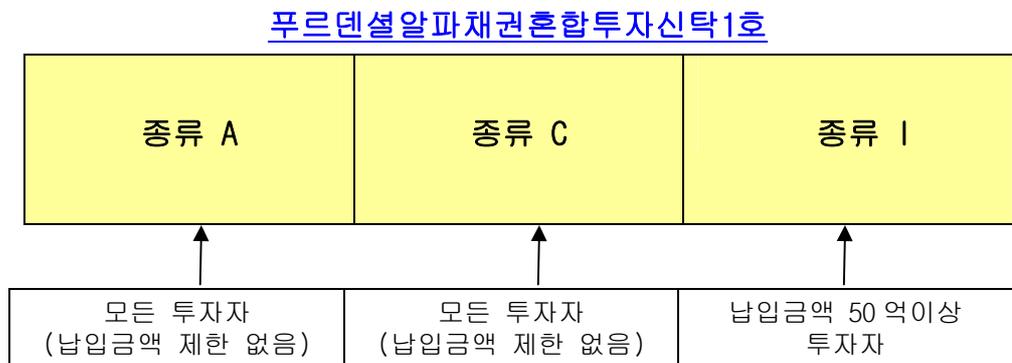
판매직원/취득권유인 \_\_\_\_\_ 서명 또는 (인)

## 제1부. 투자신탁의 기본정보

### 1. 투자신탁의 개요

1. 명 칭	푸르덴셜알파채권혼합투자신탁1호 (펀드코드: 종류A 68752, 종류C 68753)
2. 펀드존속기간	이 상품은 추가형 상품으로 종료일이 따로 없습니다.
3. 분 류	증권간접투자기구, 혼합형, 추가형, 개방형
4. 자산운용회사	푸르덴셜자산운용(주)
5. 최초설정일 등 연혁	2007.05.10 푸르덴셜알파채권혼합투자신탁 1 호 최초설정 2008.03.27 투자대상 채권 및 어음의 신용등급 변경 2008.05.06 투자대상에 주식선물 추가
6. 수탁고 추이	
7. 해 지 사 유	<p>자산운용회사는 공익 또는 수익자의 이익보호를 위하여 필요하거나 기타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금융감독원장의 승인을 얻어 이 투자신탁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금융감독원장의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이 투자신탁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p> <p>(1) 수익자 전원이 동의한 경우 (2) 1월간 계속하여 투자신탁의 원본액이 100 억원에 미달하는 경우 (3) 수익증권 전부의 환매청구가 있는 경우</p>

※ 종류형투자신탁의 구조



## II. 투자정보

### 1. 투자목적

신탁재산의 40%이상을 채권에 투자하여 안정적인 수익을 추구함과 동시에 금융공학을 활용하여 국내 주식 및 주가지수선물에 투자함으로써 채권수익 플러스 알파의 수익을 달성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 이 투자신탁은 투자신탁 재산의 40%이상을 국채, 통안채, 회사채(A-등급 이상) 등에 투자합니다.
- 주식에 30%이하 범위에서 투자합니다.
- 주식에의 투자 비중은 금융 공학적 산식(수익 민감도)에 의하여 산출된 비율에 의하여 장중 혹은 장종가에 따라 결정합니다.

\*비교지수: KIS-Reuter종합1년미만x30%+매경BP CDx70%

(비교지수는 자산운용회사 인터넷 홈페이지([www.prudentialfund.com](http://www.prudentialfund.com)))에서 전월말 기준 비교지수의 변동율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전월말 기준 비교지수의 변동율이란 전월초 비교지수 대비 전월말 비교지수의 증감분을 백분율로 나타낸 것입니다. 투자자는 동 펀드의 전월말 기준 수익률 변동율과 비교지수의 변동율을 비교함으로써 매입하신 펀드가 비교지수에 비해 잘 운용되었는지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2. 주요투자전략

- 투자신탁재산의 30%이하: 주식
- 투자신탁재산의 40%이상: 한국의 국공채, 신용등급 A-이상의 사채권
- 투자신탁재산의 40%이하: 신용등급 A2-이상의 어음
- 위탁증거금의 합계액이 투자신탁재산의 10%이하: 장내파생상품거래

#### 국내 유가증권 투자전략

##### 1) 주식부문

자산의 30%이하를 주식에 투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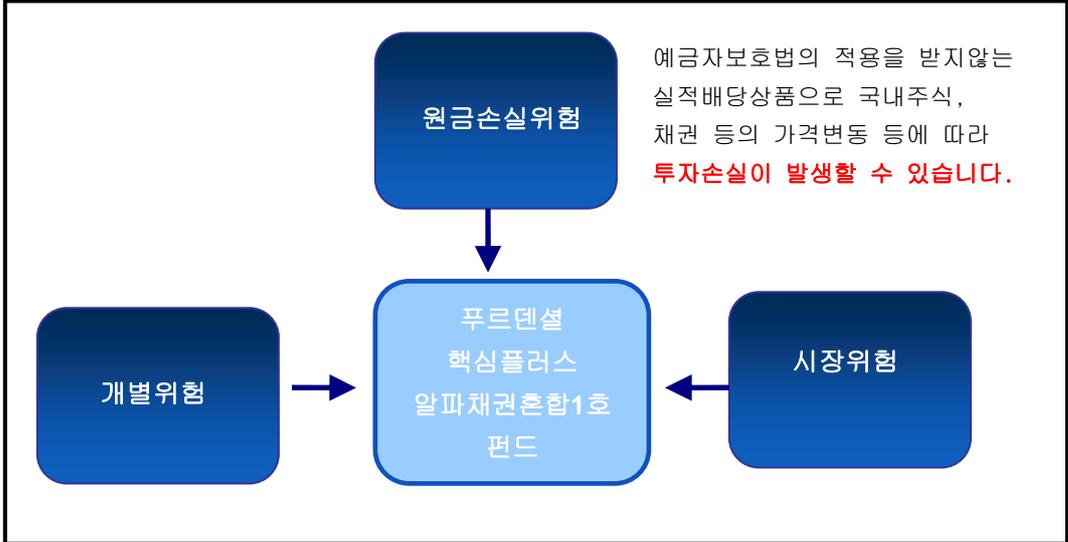
- 주식에의 투자 비중은 금융 공학적 산식(수익 민감도)에 의하여 산출된 비율에 의하여 장중 혹은 장종가에 따라 결정합니다.
- 주식시장 하락시 분할매수하고 주식시장 상승시 분할매도(Put옵션 매도형태의 손익구조 복제) 하여 자본차익을 추구하며, 주식시장 하락에 대비하여 주가지수선물을 매도(Put옵션 매수형태의 손익구조 복제)하는 운용전략을 추구합니다.

##### 2) 채권부문

- 투자신탁 재산의 40%이상을 국공채 및 A-등급 이상의 회사채, 투자신탁 재산의 40%이하를 A2-등급 이상의 CP 등에 투자

※ 투자전략에 대한 상세한 설명은 ‘제2부 투자신탁의 상세정보’의 ‘1. 투자전략 및 투자위험’ 중 ‘1. 투자전략’에 기재되어 있으니 반드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주요투자위험



(1) 원금손실위험

이 상품은 실적배당상품으로 투자 원리금 전액이 보장 또는 보호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투자원본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손실의 위험이 존재하며 투자금액의 손실 내지 감소의 위험은 전적으로 투자자가 부담하며, 자산운용회사나 판매회사 등 어떤 당사자도 투자손실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2) 개별위험

신탁재산에서 투자하는 주식은 주식시장에서 거래되어 종목별로 각각 가격이 변동하며 그에 따라 신탁재산의 가치가 변동될 위험이 있습니다.  
 신탁재산에서 투자하는 채권, 어음 등은 금리의 변동에 따라 가격이 변동하며 그에 따라 신탁재산의 가치가 변동될 위험이 있습니다.  
 또한, 신탁재산의 가치는 투자대상종목 발행회사의 영업환경, 재무상황 및 신용상태의 악화 등에 따라 급격히 변동될 수 있습니다.

(3) 시장 위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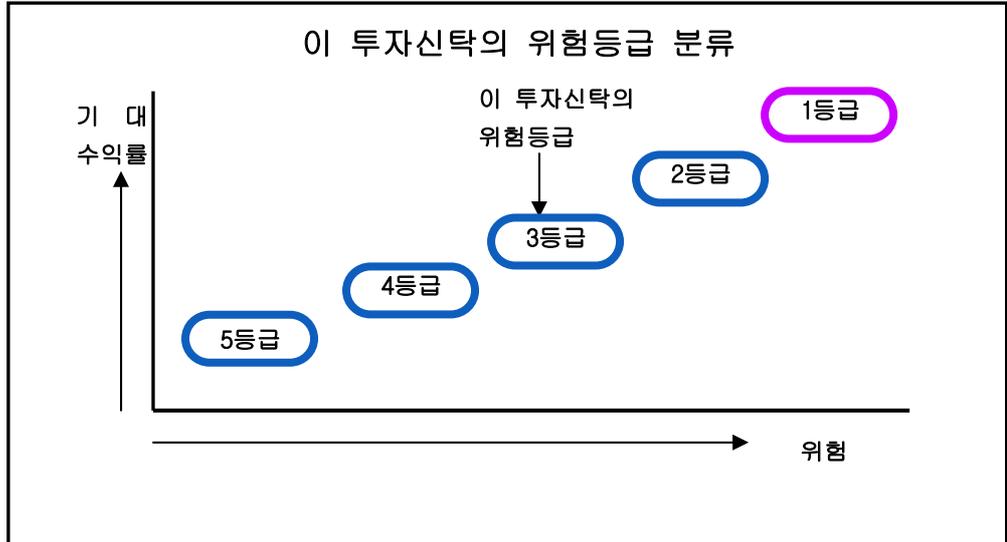
신탁재산을 주로 주식, 채권 및 어음 등 투자증권에 투자함으로써 이 상품은 경제성장률, 이자율 등 거시경제지표의 변화에 따른 가격 변동 위험에 노출됩니다.

※ 이 투자신탁 수익증권의 가격은 펀드가 투자하고 있는 유가증권 등의 가격변동에 의해 영향을 받으며, 운용에 의한 손익은 모두 이 투자신탁의 투자자에게 귀속됩니다.

※ 투자위험에 대한 상세한 설명은 ‘제2부 투자신탁의 상세정보’의 ‘1. 투자전략 및 투자위험’ 중 ‘2. 투자위험’에 기재되어 있으니 반드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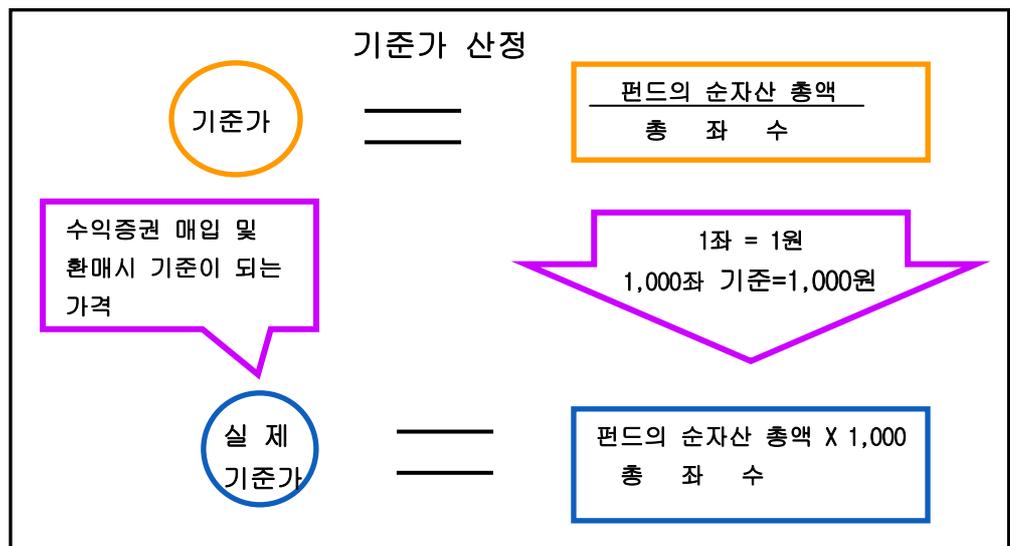
4. 투자위험에 적합한 투자자 유형

자산운용회사는 투자신탁의 원본손실가능성, 변동성 등을 기준으로 펀드의 위험등급을 분류하고 있습니다. 또한 원본손실가능성의 판단기준으로는 가격하락위험, 신용위험, 유동성위험, 집중위험 등이 있습니다. 이 투자신탁은 신탁재산의 40%이상을 회사채 및 국공채 등에 투자하고 신탁재산의 30%이하를 주식에 투자하는 상품으로 투자위험 5등급 중 3등급에 해당하는 보통 수준의 투자위험을 지니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투자신탁은 채권과 주식 등에 투자함에 따라 중간 정도의 투자위험으로 중간 정도의 투자수익을 추구하는 투자자에게 적합합니다



위험등급	푸르덴셜자산운용에서 운용중인 투자신탁 상품 (예시)
1 등급	푸르덴셜나폴레옹정통액티브주식투자신탁1호
2 등급	푸르덴셜르네상스혼합투자신탁2-1호
3 등급	푸르덴셜하모니혼합투자신탁4호
4 등급	푸르덴셜퇴직연금2040혼합투자신탁 자산신탁1호
5 등급	안심국공채투자신탁KM1호

5. 기준가격의 산정 및 공시



기준가격 산정방법	당일발표하는 기준가격은 직전일의 대차대조표상에 계상된 투자신탁의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차감한 금액(순자산총액)을 직전일의 수익증권 총좌수로 나누어 산출하며, 1,000좌 단위로 원미만 셋째자리에서 4사5입하여 원미만 둘째자리까지 계산합니다.
기준가격 산정주기	매일
기준가격 공시시기	매일
기준가격 공시방법	전자공시
기준가격 공시장소	자산운용회사( <a href="http://www.prudentialfund.com">www.prudentialfund.com</a> ) · 판매회사 홈페이지, 판매회사 각 영업점
종류수익증권 기준가격	이 투자신탁은 종류형 투자신탁으로서 각 종류 수익증권별로 보수가 상이하므로 기준가격에 차이가 발생합니다.

## 6. 운용전문인력

성명	소속부서	직위	주요경력 및 이력
김범희	SI그룹	그룹장	파생상품운용 ◦ 현대투자신탁증권(11년9개월) ◦ 푸르덴셜자산운용(8년4개월)
강석재	SI팀	운용역	파생상품운용 ◦ 푸르덴셜자산운용(1년7개월)

\* 신탁재산운용은 팀제로 운용하며, 자산운용회사의 사정에 따라 예고없이 펀드매니저가 교체될 수 있습니다.

※ 운용전문인력에 대한 상세한 설명은 ‘제3부 자산운용회사 및 투자신탁의 관계인에 관한 사항’의 ‘1. 자산운용회사’ 중 ‘5. 운용전문인력에 관한 사항’에 기재되어 있으니 반드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7. 투자실적

다음의 투자실적은 이 투자신탁의 **과거 성과를 나타낼 뿐 미래의 운용성과를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 투자신탁의 투자성과와 관련된 상세한 내용은 자산운용협회 ([www.amak.or.kr](http://www.amak.or.kr)) 전자공시사이트에 게시된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등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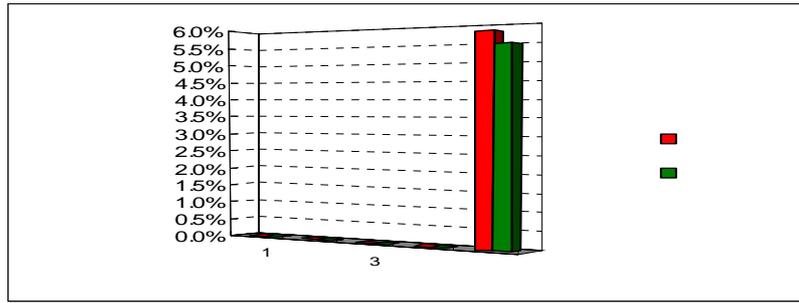
### (1) 연평균 수익률

<A클래스>

기간	설정일 이후
	07-05-10~08-02-11
투자신탁	5.80%
비교지수	5.46%

※비교지수 산출 방법: KIS-Reuter종합1년미만x30%+매경BP CDx70%

※상기 수익률은 연환산 수익률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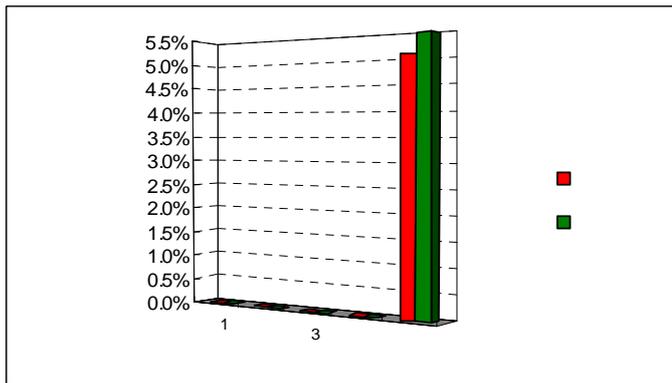


<C클래스>

기간	설정일 이후
	07-05-10~08-02-11
투자신탁	5.06%
비교지수	5.46%

※비교지수 산출 방법 : KIS-Reuter종합1년미만x30%+매경BP CDx70%

※상기 수익률은 연환산 수익률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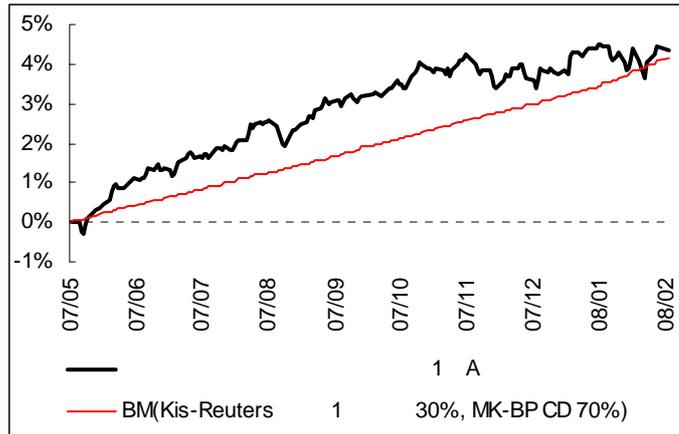
(2) 연도별 수익률 추이

<A클래스>

구분	최근 1년차
	07-05-10~08-02-11
투자신탁	4.36%
비교지수	4.12%

※비교지수 산출방법 : KIS-Reuter종합1년미만x30%+매경BP CDx70%

※상기 수익률은 해당기간 수익률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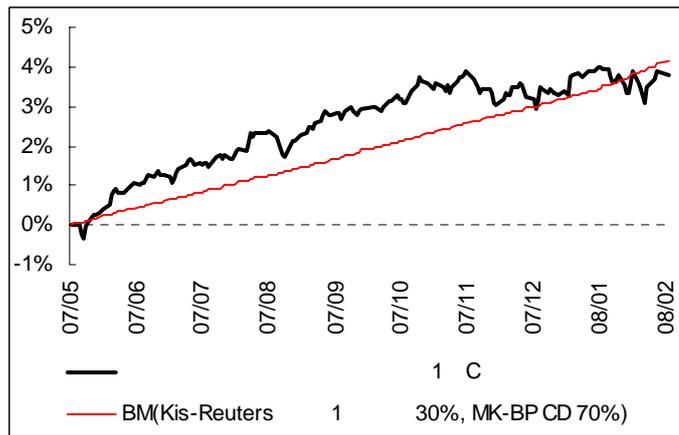


<C클래스>

구분	최근 1년차
	07-05-10~08-02-11
투자신탁	3.81%
비교지수	4.12%

※비교지수 산출방법: KIS-Reuter종합1년미만x30%+매경BP CDx70%

※상기 수익률은 해당기간 수익률임



### III. 수수료 · 보수, 과세

#### 1. 수익자가 직접 부담하는 수수료

구분	지급비율(연평균가액의 %)			비고 (지급시기)
	종류 A	종류 C	종류 I	
선취판매수수료	0.7%	-	-	매입시
후취판매수수료	-	-	-	-
환매수수료 (보유기간에 따라 이익금 기준 징수)	-	90일미만 이익금의 70%		환매대금 지급시

주) 종류는 판매보수에 따라 구분하였으며, 종류수익증권 A, C 는 투자금액에 대한 제한이 없고, 선취판매수수료 유무에 따라 구분하였으며, 종류수익증권 I는 50억 이상 투자하는 투자자에게만 판매됩니다. (다만, 종류수익증권 C 의 경우 판매보수가 다른 종류수익증권 보다 더 높음을 주지하시기 바랍니다.)

2. 투자신탁이 부담하는 보수 및 비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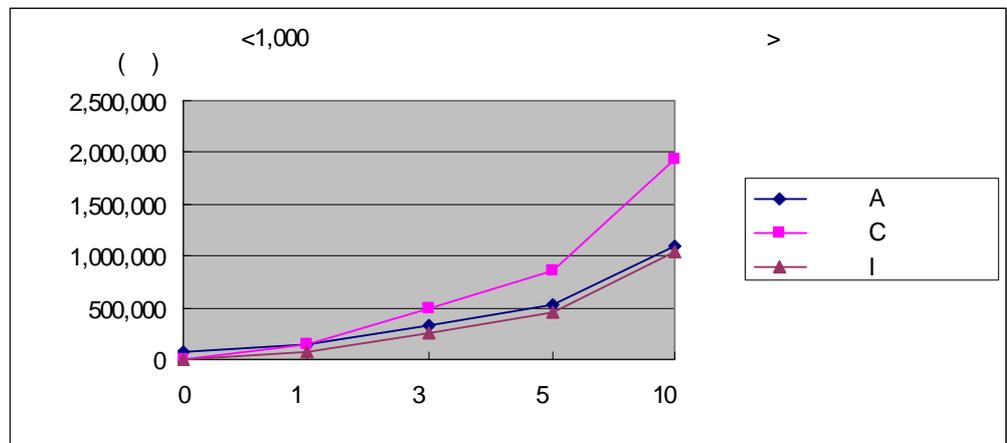
구 분	지급비율(순자산총액의 %)			비고 (지급시기)
	종류 A	종류 C	종류 I	
운용회사 보수	연 0.44	연 0.44	연 0.44	매 3개월 후급
판매회사 보수	연 0.31	연 1.01	연 0.31	
수탁회사 보수	연 0.03	연 0.03	연 0.03	
일반사무관리 보수	연 0.02	연 0.02	연 0.02	
기타비용	실비	실비	실비	사유발생시
총보수 비용비율	연 0.80 +실비	연 1.50 +실비	연 0.80 +실비	-

주1) 기타비용이란 유가증권 매매비용 등이 투자신탁에서 경상적, 반복적으로 지출되는 비용으로서 실제비용은 투자신탁의 설정규모, 순자산가치, 시장상황 변동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000만원을 투자할 경우 투자자가 부담하게 되는 수수료 및 보수 비용의 투자기간별 예시(누적)

구 분	1년	3년	5년	10년
종류 A	152,000	328,505	523,102	1,101,387
종류 C	153,750	484,697	849,566	1,933,851
종류 I	82,000	258,505	453,102	1,031,387

주) 투자자가 1,000만원을 투자했을 경우 직·간접적으로 부담할 것으로 예상되는 선취판매수수료 또는 보수·비용을 누계액으로 산출한 것입니다. 이익금은 모두 재투자하며, 연간투자수익률은 5%, 수수료를 및 총 보수·비용비율은 일정하다고 가정하였습니다. 그러나 실제 투자자가 부담하게 되는 보수 및 비용은 기타비용의 변동, 보수의 인상 또는 인하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3. 투자소득에  
대한 과세

(1) 투자신탁에 대한 과세: 별도의 세금부담이 없는 것이 원칙

투자소득에 대한 과세는 소득이 발생하는 투자신탁 단계에서의 과세와 수익자에게 이익을 분배하는 단계에서의 과세로 나누어집니다.

투자신탁단계에서는 소득에 대해서 별도의 세금 부담을 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투자신탁에서 납부한 채권 등의 이자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은 모두 환급을 받고 있습니다.

발생소득에 대한 세금 외에 투자재산의 매입, 보유, 처분 등에서 발생하는 취득세, 등록세, 증권거래세 및 기타 세금에 대해서는 투자신탁의 비용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다만, 해당 펀드가 일정요건을 만족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증권거래세, 취득세, 등록세 등의 면제 또는 감면 혜택을 받게 됩니다.

(2) 수익자에 대한 과세: 원천징수 원칙

수익자는 투자신탁의 이익을 지급받는 날, 특약에 의하여 원본에 전입하는 날, 또는 계약을 연장하는 날에 세금을 원천징수 당하게 됩니다. 다만, 해당 투자신탁의 과세상 이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유가증권 시장 및 코스닥 시장에 상장된 유가증권(채권 등 제외) 및 이를 대상으로 하는 선물, 벤처기업의 주식 등에서 발생하는 매매·평가 손익은 과세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3) 수익자에 대한 과세율: 개인 15.4%(주민세 포함), 일반법인 14%

거주자 개인이 받는 투자신탁의 과세이익에 대해서는 15.4% (소득세 14%, 주민세 1.4%)의 세율로 원천징수 됩니다. 이러한 소득은 개인의 연간 금융소득(이자, 배당소득)이 4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분리과세 원천징수로 납세의무 종결되나, 연간 금융소득(이자, 배당소득)이 4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유형별 소득을 합산하여 개인소득세율(최고한도 세율 35%)로 종합과세 됩니다.

내국법인이 받는 투자신탁의 과세이익은 14%의 세율로 원천징수 (금융기관 등의 경우에는 제외)됩니다. 이러한 소득은 법인의 결산 시점에 투자신탁으로부터 받게 되는 수입금액과 다른 법인 수입금액 전체를 합산한 소득에 대하여 법인세율(최고 한도세율 25%)을 적용하여 과세하며, 이전에 납부한 원천징수세액은 기납부세액으로 공제 받게 됩니다.

※상기 투자소득에 대한 과세내용은 정부 정책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IV. 수익증권의 매입·환매, 분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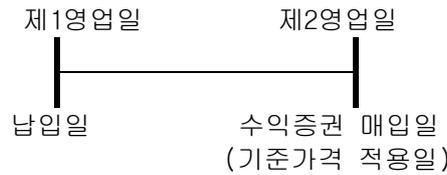
1. 매 입

(1) 매입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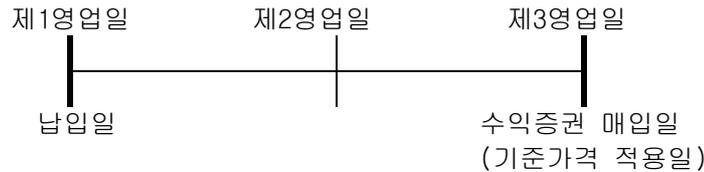
이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을 취득하시려면 판매회사의 영업점에서 영업시간 중에 매입을 하셔야 합니다. 다만, 판매사에서 온라인 판매를 개시하는 경우, 온라인을 통한 매입도 가능합니다. 또한 이 투자신탁의 매입 시 자동이체를 통한 자금 납입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2) 매입 청구시 적용되는 기준가격

(가) 오후 17시 이전 자금을 납입한 경우: 자금을 납입한 영업일의 다음 영업일에 발표하는 수익증권 기준가격 적용



(나) 오후 17시 경과 후 자금을 납입한 경우: 자금을 납입한 영업일로부터 제3영업일에 공고되는 수익증권의 기준가격 적용



- 판매회사가 전산시스템에 의하여 매입업무를 처리한 경우 거래전표에 표시된 시간을 매입청구를 받은 시간으로 봅니다.

- 이 경우 영업일은 판매회사 영업일(다만, 토요일은 제외)을 말합니다.

**※ 단, 이 투자신탁을 최초로 설정하는 때에는 투자신탁 최초설정일의 기준가격은 1,000원으로 합니다.**

※마켓타이밍

자산운용회사는 투자자의 마켓타이밍 또는 이와 관련된 과도한 매매, 단기매매를 허용하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마켓타이밍은 간접투자기구 순자산가치의 산정방법의 불완전성, 결함 또는 시차를 이용하는 동일한 간접투자기구의 수익증권에 대한 단기간의 매입, 환매행위를 의미합니다. 자산운용회사는 수익자간 이익의 형평을 도모하기 위하여 그 재량에 의하여 필요하고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마켓타이밍 행위를 하거나 마켓타이밍 행위를 하는 것으로 의심되는 투자자의 수익증권 매입신청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 투자신탁 수익증권의 매입과 관련하여 상세한 설명은 ‘제2부 투자신탁의 상세정보’의 ‘IV. 매입·환매 및 분배관련 유의사항’ 중 ‘1. 매입관련 유의사항’에 기재되어 있으니 반드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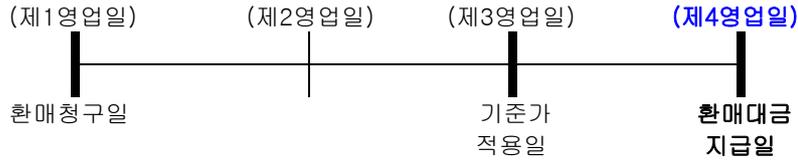
## 2. 환 매

### (1) 수익증권의 환매

이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을 환매하시려면 판매회사의 영업점에서 환매청구를 하셔야 합니다.

### (2) 환매 청구시 적용되는 기준가격

(가) 오후 17시 이전 환매를 청구한 경우 : 환매를 청구한 날로부터 제3영업일의 수익증권의 기준가격을 적용하여 제4영업일에 환매금액 지급



(나) 오후 17시 경과 후 환매를 청구한 경우: 환매를 청구한 날로부터 제4영업일의 수익증권의 기준가격을 적용하여 제5영업일에 환매금액 지급



- 판매회사가 전산시스템에 의하여 환매업무를 처리한 경우 거래전표에 표시된 시간을 환매청구를 받은 시간으로 봅니다
- 영업일은 한국증권선물거래소의 개장일을 말합니다. 다만, 환매청구일이 판매회사의 영업일이면서 한국증권선물거래소의 개장일이 아닌 경우(토요일은 제외)에는 그 환매청구일을 영업일에 포함하여 산정합니다.

**(3) 환매수수료**

수익증권의 보유 기간에 따라 환매수수료를 차등부과하며, 부과된 수수료는 투자신탁 재산으로 편입됩니다.

구 분	지급비율	비고 (지급시기)
환매수수료 (보유기간에 따라 이익금 기준 징수)	<종류 A 수익증권> 없음 <종류 C, I 수익증권> 90일미만 이익금의 70%	환매시

- 판매회사는 환매수수료 및 관련세금 등을 공제한 금액을 투자자에게 지급합니다.
- 판매회사는 투자신탁약관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수익증권통장거래약관”에 정한 바에 따라 목적식 투자 고객 등에 대하여 환매수수료의 부과를 면제할 수 있습니다.

**(4) 매입청구 및 환매청구의 취소(정정)**

이 투자신탁 수익증권의 매입청구 및 환매청구의 취소(정정)는 매입청구일 및 환매청구일 당일 17시[오후 5시] 이전까지 가능합니다.

**(5) 수익증권의 일부환매**

수익자는 보유한 수익권 좌수 중 일부에 대하여 환매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수익자가 수익증권의 일부에 대한 환매를 청구한 경우에 판매회사는 그 수익증권을 환매하고, 잔여좌수에 대하여는 새로운 수익증권을 교부합니다.

※ 투자신탁 수익증권의 환매과 관련하여 상세한 설명은 ‘제2부 투자신탁의 상세정보’의 ‘Ⅳ. 매입 환매 및 분배관련 유의사항’ 중 ‘2. 환매관련 유의사항’에 기재되어 있으니 반드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이익 등의 분배**

- ① 이 투자신탁의 회계기간은 투자신탁의 최초설정일로부터 매 1년간으로 합니다. 다만, 신탁계약 해지시에는 투자신탁 회계기간 계약 초일부터 신탁계약의 해지일까지로 합니다.
- ② 수익자는 투자신탁회계기간의 종료에 따라 발생하는 수익증권별 이익금을 현금 또는 새로이 발행되는 간접투자증권으로 분배합니다.
- ③ 수익자는 이익분배금에서 세액을 공제한 금액의 범위 내에서 분배금 지급일의 당해 종류 수익증권 기준가격으로 당해 종류 수익증권을 매수 할 수 있습니다.
- ④ 또한 투자신탁계약기간의 종료 또는 투자신탁의 해지에 따라 발생하는 투자신탁 원본의 상환금 및 이익금(이하 “상환금등”)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투자신탁 계약 종료일 현재 투자신탁재산인 유가증권의 매각지연 등의 사유로 인하여 상환금등의 지급이 곤란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해소된 이후에 지급할 수 있습니다.
- ⑤ 수익자가 상환금등의 지급개시일 이후 5년간 이익분배금 또는 상환금등의 지급을 청구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권리를 상실하고 판매회사에 귀속됩니다.

※ 투자신탁의 이익분배와 관련하여 상세한 설명은 ‘제2부 투자신탁의 상세 정보’의 ‘IV. 매입·환매 및 분배관련 유의사항’ 중 ‘3. 이익분배 등 관련 유의사항’에 기재되어 있으니 반드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 2 부. 투자신탁의 상세 정보**

**I. 투자전략 및 투자위험 등**

**1. 투 자 전 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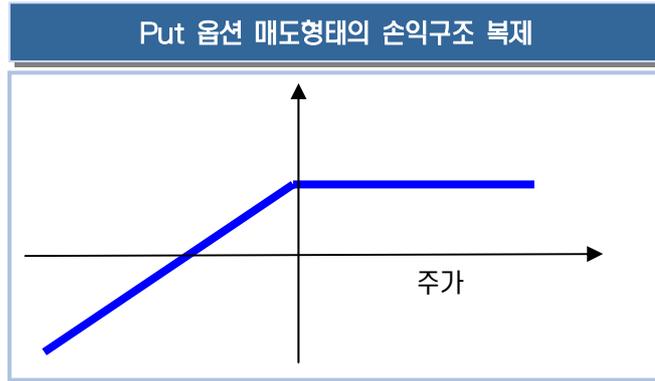
- 투자신탁재산의 30%이하: 주식
- 투자신탁재산의 40%이상: 한국의 국공채, 신용등급 A-이상의 사채권
- 투자신탁재산의 40%이하: 신용등급 A2-이상의 어음
- 위탁증거금의 합계액이 투자신탁재산의 10%이하: 장내파생상품거래

**국내 유가증권 투자전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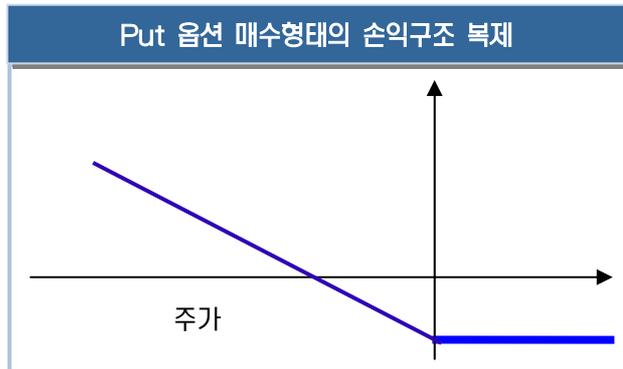
신탁재산의 40%이상을 채권에 투자하여 안정적인 수익을 추구함과 동시에 금융공학을 활용하여 국내 주식 및 주가지수선물에 투자함으로써 채권수익 플러스 알파의 수익을 달성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 1) 주식부문(신탁재산의 30%이하를 주식에 투자)
  - 주식에의 투자 비중은 금융 공학적 산식(수익 민감도)에 의하여 산출 된 비율에 의하여 장중 혹은 장종가에 따라 결정
  - 주식시장 하락시 분할매수하고 주식시장 상승시 분할매도(Put 옵션 매도형태의 손익구조 복제) 하여 자본차익을 추구하며, 주식시장 하락에 대비하여 주가지수선물을 매도(Put 옵션 매수형태의 손익구조 복제)하는 운용전략을 추구

\* 주식 운용전략(Put 옵션 매도형태의 손익구조 복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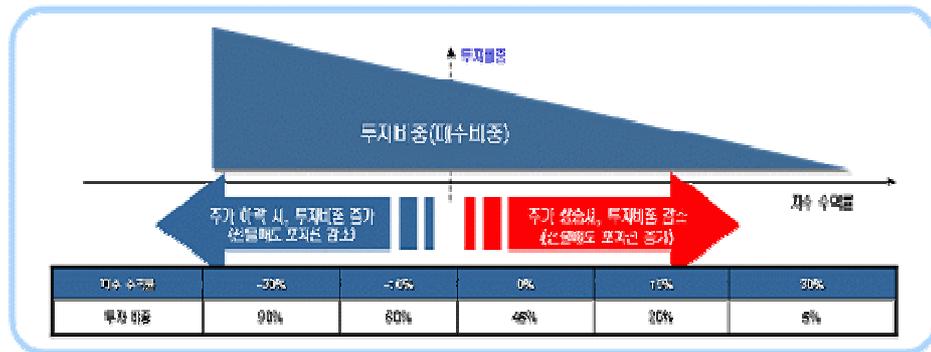


\* 주가지수선물 운용전략(Put옵션 매수형태의 손익구조 복제)



\* 유의사항: 상기 손익구조 복제는 금융공학의 이론적인 매매방식을 적용하여 도출되는 것을 표시한 것으로 주식시장의 급등락 등의 경우에는 손익구조가 달라질 수 있음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 주식매매 및 주가지수선물매매전략을 결합한 운용구조



2) 채권부문

- 투자신탁 재산의 40%이상을 국공채 및 A-등급 이상의 회사채, 투자신탁 재산의 40%이하를 A2-등급의 CP 등에 투자

2. 투자 위험

(1) 투자 위험

이 투자신탁은 원본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투자원본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손실의 위험이 존재하며 투자금액의 손실 내지 감소의 위험은 전적으로 투자자

가 부담하며, 자산운용회사나 판매회사 등 어떤 당사자도 투자손실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또한, 이 투자신탁은 **예금자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은행의 예금과 달리 실적에 따른 수익을 취득하므로 은행 등에서 판매하는 경우에도 예금보험공사 등의 보호를 받지 못합니다.**

구 분	투자위험의 주요 내용
원금 손실위험	이 상품은 실적배당상품으로 투자 원리금 전액이 보장 또는 보호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투자원본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손실의 위험이 존재하며 투자금액의 손실 내지 감소의 위험은 전적으로 투자자가 부담하며, 자산운용회사나 판매회사 등 어떤 당사자도 투자손실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시장 위험	이 투자신탁의 신탁재산은 주로 주식, 채권 및 어음등 투자증권에 투자함으로써 이 상품은 경제성장률, 이자율등 거시경제지표의 변화에 따른 위험에 노출됩니다.
개별위험	신탁재산에서 투자하는 주식은 주식시장에서 거래되어 종목별로 각각 가격이 변동하며 그에 따라 신탁재산의 가치가 변동될 위험이 있습니다. - 신탁재산에서 투자하는 채권, 어음등은 금리의 변동에 따라 가격이 변동하며 그에 따라 신탁재산의 가치가 변동될 위험이 있습니다. - 또한, 신탁재산의 가치는 투자대상종목 발행회사의 영업환경, 재무상황 및 신용상태의 악화등에 따라 급격히 변동될 수 있습니다.
유동성 위험	증권시장규모등을 감안할 때 신탁재산에서 거래량이 풍부하지 못한 종목에 투자하는 경우 투자대상 종목의 유동성부족에 따른 환금성에 제약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는 신탁재산의 가치하락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파생상품 투자위험	파생상품은 작은 증거금으로 거액의 결제가 가능한 지렛대효과(레버리지 효과)로 인하여 기초자산에 직접 투자하는 경우에 비하여 훨씬 높은 위험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
펀드규모위험	투자신탁의 설정초기 또는 환매 등의 이유로 투자신탁 규모가 일정규모 이하로 작아지는 경우에는 투자신탁에서 투자하는 투자대상자산의 편입 및 분산투자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일부 자산에 집중 투자될 수 있으며, 이러한 요인들은 투자신탁 및 자산신탁의 성과 및 위험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거래상대방 및 신용위험	보유하고 있는 국내 유가증권, 단기 금융상품을 발행한 회사가 신용등급의 하락 또는 부도 등과 같은 신용사건에 노출되는 경우 그 유가증권, 단기금융상품 등의 가치가 하락할 수 있습니다.
조기환매 위험	수익자가 환매요청시 수익증권의 보유기간에 따라 환매수수료가 부과되며 동 환매수수료는 신탁재산으로 귀속됩니다.

환매 연기 위험	특별한 사유로 인해 환매가 연기될 수 있습니다. 환매가 연기되는 사유에 대해서는 본 투자설명서 ‘제2부. 투자신탁의 상세정보’에 ‘IV매입·환매 및 분배관련 유의사항’의 ‘2.환매관련 유의사항/(3) 수익증권의 환매연기사유’에서 상세하게 설명되어 있습니다.
기타 위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이 상품은 환매청구시와 환매일까지의 기간 중 순자산가치가 변동할 수 있습니다.</li> <li>- 예상치 못한 국내외 정치, 경제상황 및 정부의 조치, 세제의 변경 등에 따라 신탁재산 운용에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li> <li>- 예금자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은행 등에서 이 투자신탁이 판매되는 경우에도 은행예금과 달리 예금보험공사의 보호를 받지 못함에 따라 투자원리금이 전액이 보장 또는 보호되지 않습니다.</li> </ul>

3. 투자 대상

투자대상	투자비율 (신탁재산 대비)	투 자 대 상 세 부 설 명
①주식	30%이하 (주식+ETF:30%이하)	주식은 증권거래법 제2조제1항제5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한 특별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출자증권, 주권 또는 신주인수권을 표시하는 증서(주권상장법인 또는 코스닥상장법인이 발행한 것 및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시장에 기업공개를 위하여 발행한 공모주에 한한다)를 말합니다.
②채권	40%이상	채권은 증권거래법 제2조제1항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국채증권, 지방채증권, 특별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채권, 사채권(신용평가등급이 A-이상이어야 하며 사모사채권 및 자산유동화에관한법률에 의한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발행되는 사채 및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 또는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라 발행되는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또는 주택저당증권은 제외)을 말합니다.
③자산유동화증권	40%이하	자산유동화증권은 자산유동화에관한법률에 의한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발행되는 사채,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 또는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라 발행되는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또는 주택저당증권을 말합니다.
④어음	40% 이하	어음은 법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이 발행·매출 또는 중개한 어음·채무증서 또는 증권거래법시행령 제2조의3제4호의 규정에 의한 어음으로서 신용등급이 A2- 이상인 것을 말합니다.
⑤금리스왑거래		금리스왑거래는 거래시점에서 교환하는 약정이자의 산출근거가 되는 채권 또는 채무증서의 총액이 투자신탁이 보유하는 채권 또는 채무증서총액의 100%이하가 되도록 합니다.
⑥수익증권등	5%이하 ETF 30%이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수익증권등은 법에 의하여 자산운용회사가 발행한 수익증권 및 투자회사가 발행한 주식을 말합니다.</li> <li>- ETF 란 법 제 137 조의 규정에 의한 상장지수간접투자기구 간접투자증권을 말합니다.</li> </ul>
⑦투자증권		투자신탁이 보유하는 투자증권총액의 50%이하로 합니다.

대여		
⑧주식 및 채권관련장내 파생상품	장내파생상품의 거래는 거래에 따른 위탁증거금의 합계액이 10%이하	주식 및 채권관련장내파생상품은 증권거래법에 의한 유가증권시장 또는 선물거래법에 의한 선물시장에서 거래되는 주가지수선물, 주가지수옵션, 주식옵션, 코스닥지수선물, 코스닥지수옵션, <b>주식선물</b> , CD 금리선물, 통안증권금리선물, 국채선물 및 국채선물옵션을 말합니다.
⑨환매조건부채권매도	투자신탁이 보유하는 채권총액의 50%이하로 합니다.	
⑩투자증권 차입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20%이하로 합니다.	주식, 채권, 어음 등 투자증권의 차입을 말합니다.
⑪기 타	환매를 원활하게 하고 투자대기자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해 단기대출(30 일 이내 금융기관간 단기자금거래에 의한 자금공여) 및 금융기관예치(만기 1년 이내)의 방법으로 운용합니다.	

※ 위의 ①항 내지 ⑤항의 투자비율 제한은 투자신탁 최초설정일로부터 1개월간, 투자신탁회계기간종료일 이전 1개월간, 투자신탁계약기간 종료일 이전 1개월간은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다만, 3영업일 동안 누적하여 추가설정 또는 해지청구가 각각 신탁재산의 10%를 초과하는 경우 또는 신탁재산인 투자증권등 자산의 가격변동으로 ①항 내지 ⑤항의 투자비율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15일 이내에 투자비율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 4. 투 자 제 한

자산운용회사는 이 투자신탁재산을 운용할 때 다음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다만, 법령 및 규정에서 예외적으로 인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구 분	내 용	적용 제외
단기대출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여 법시행령 제77조에서 정하는 자 자산운용회사의 이해관계인에게 단기대출로 운용하는 행위	
동일종목 투자증권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여 동일종목의 투자증권에 투자하는 행위. 이 경우 동일회사가 발행한 투자증권 중 주식을 제외한 투자증권은 동일종목으로 봅니다. 다만, 다음 각목의 경우에는 각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10%를 초과하여 동일종목 투자증권에 투자할 수 있습니다. 가. 국채증권, 한국은행통화안정증권 및 정부가 원리금의 상환을 보증한 채권에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0%까지 투자하는 경우 나. 지방채증권,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에 의한 정부투자기관이 발행한 채권 및 어음(법제 2 조제 7 호의 투자증권에 해당하는 어음에 한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 법시행령 제 6 조제 1 호 내지 제 6 호 및 제 8 호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이 발행한 채권.채무증서 또는 어음, 동조항의 금융기관이 보증한 채권(증권거래법 제 2 조제 3 항의 규정에 의한 모집의 방법에 의하여 발행된 채권에 한한다).채무증서 또는 어음,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 또는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라 발행되는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또는 주택저당증권(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에 의한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 또는 법시행령 제 6 조제 1 호 내지 제 6 호 및 제 8 호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이 지급 보증한 것에 한한다) 및 상장지수간접투자기구의	최초설정일로부터 1개월간

	간접투자증권에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30%까지 투자하는 경우 다. 동일회사가 발행한 주식의 시가총액비중(매일의 당해주식의 종가의 총액을 유가증권시장에서 거래되는 모든 종목의 종가의 총액을 합한 금액으로 나눈 비율을 1 월간 평균한 비율을 말한다)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당해 주식에 투자하는 경우. 이 경우 시가총액비중은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산정하여 그 다음 1 월간 적용합니다.	
동일회사 주식	투자신탁 자산총액으로 동일회사가 발행한 주식총수의 10%를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	
파생상품	동일회사가 발행한 투자증권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주식 및 채권 관련 장내파생상품 거래에 따르는 위험의 평가액[간접투자기구의 설정일부터 매 1월(매 1월이 되는 날 전에 간접투자기구가 해지되는 경우에는 그 해지일까지의 기간을 말한다)이 되는 날을 기준으로 그 매1월의 매일의 위험평가액을 산술평균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는 행위	최초설정일로부터 1개월간
	주식 및 채권 관련 장내파생상품 거래에 따른 위험평가액이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는 행위	
	주식 및 채권 관련 장내파생상품 거래에 따른 위험평가액을 포함한 투자신탁재산 총위험평가액이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0%를 초과하는 행위	
계열회사 주식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여 계열회사가 발행한 주식에 투자하는 행위. 다만, 계열회사가 발행한 전체주식의 시가총액비중의 합이 1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계열회사가 발행한 전체 주식가액이 시가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중까지 투자할 수 있습니다.	
후순위채	투자신탁재산을 그 발행인이 파산하는 때에 다른 채무를 우선 변제하고 잔여재산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그 채무를 상환한다는 조건이 있는 후순위채권에 투자하는 행위	

※ 투자신탁재산으로 보유하고 있는 투자증권등 자산의 가격변동, 투자신탁의 일부 해지 등의 사유로 인하여 불가피하게 투자신탁약관 제37조제1항제6호 내지 제10호, 투자신탁약관 제38조제1항 제1호 내지 제7호의 규정에 의한 투자한도를 초과하게 된 경우에는 초과일로부터 3월 이내에 그 투자한도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다만, 부도 등으로 매각이 불가능한 투자증권은 매각이 가능한 시기까지 이를 그 투자한도에 적합한 것으로 봅니다.

※ 투자신탁의 최초 설정일로부터 1월간은 투자신탁약관 제37조제1항제8호, 투자신탁약관 제38조제1항 제2호본문, 제4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 II. 자산의 평가

### 1. 자산의 평가

-투자신탁재산의 평가는 관련법령 및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되 평가기준일에 거래실적이 없어 공정한 가치의 산정이 곤란한 자산, 시장매각이 제한되거나 매각이 곤란한 자산은 관련법령 및 규정에 의한 가격을 기초로 하여 간접투자재산평가위원회가 정하는 가격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 관련법령에서 정하는 주요 평가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대상 자산	평가방법
①상장채권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달의 직전 3월간 계속 매월 10 일 이상 유가증권시장에서 시세가 형성된 채권에 한한다)	평가기준일에 유가증권시장에서 거래된 최종시가를 기준으로 2 이상의 채권평가회사가 제공하는 가격정보를 기초로 한 가격
②비상장채권 ((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상장채권을 포함한다)	2 이상의 채권평가회사가 제공하는 가격정보를 기초로 한 가격
③상장주식 또는 코스닥상장주식	평가기준일에 유가증권시장 또는 코스닥시장에서 거래된 최종시가
④기업어음 또는 금융기관이 발행한 채무증서	2 이상의 채권평가회사가 제공하는 가격을 기초로 한 가격
⑤장내파생상품	장내파생상품이 거래되는 유가증권시장 등이 발표하는 가격
⑥간접투자증권	평가기준일에 공고된 기준가격. 다만, 상장 또는 등록된 간접투자증권은 유가증권시장 또는 코스닥시장에서 거래된 최종시가

### III. 투자증권, 장내파생상품 거래시 중개회사의 선정기준

#### 1. 중개회사의 선정기준

구 분	중개회사의 선정기준					
가. 투자 증권 거래	평가항목	운영에 대한 기여도	주문체결 능력	비용 또는 수익	정보제공 및 settlement	합계
	항목가중치	50%	15%	10%	25%	100%
나. 장내 파생 상품 거래	* 각 평가항목은 5 척도(A, B, C, D, E)로 평가 * 각 등급별 중개회사의 비율은 A(15%), B(20%), C(30%), D(20%), E(15%)를 원칙, 상하 5% 범위 이내 조정 * 각 평가자가 평가한 5 척도의 환산점수는 A(10 점), B(8 점), C(6 점), D(4 점), E(2 점) * 각 평가항목별 평가치를 항목가중치로 가중 평균하여 합산. * 각 거래 자산별로 일정한 수의 범위 이내에서 거래 가능한 중개회사로 선정					

- \* 투자증권, 장내파생상품 중 일부 자산은 상기 기준이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 상기 선정기준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IV. 매입 · 환매 및 분배관련 유의사항

1. 매입관련  
유의사항

2. 환매관련  
유의사항

이 투자신탁의 추가설정은 자산운용회사가 결정하므로 이 투자신탁 수익증권을 매입한 수익자가 추가로 이 투자신탁 수익증권을 매입하는 경우 자산운용회사의 추가 설정 여부에 따라 매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이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을 환매하시려면 판매회사의 영업점에서 직접 환매 청구를 하셔야 합니다. 다만, 판매회사가 해산, 허가취소, 업무정지 등의 사유(이하 “해산 등”)으로 인하여 환매청구에 응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자산운용회사에 직접 청구할 수 있으며, 자산운용회사가 해산 등으로 인하여 환매에 응할 수 없는 경우 수탁회사에 직접 청구가 가능합니다. 투자자는 이 투자신탁의 일부에 대해서 환매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1) 수익증권의 환매제한

자산운용회사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환매청구에 응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 ① 수익자 또는 질권자로서 권리를 행사할 자를 정하기 위하여 일정한 날을 정하여 수익자명부에 기재된 수익자 또는 질권자를 그 권리를 행사할 수익자 또는 질권자로 보도록 한 경우로서 이 일정한 날의 전전영업일(15시 경과 후에 환매청구는 경우에는 전전전영업일)과 그 권리를 행사할 날까지의 사이에 환매청구를 한 경우
- ② 법령 또는 법령에 의한 명령에 의하여 환매가 제한되는 경우

(2) 수익증권의 환매연기

법령과 신탁약관에서 정한 사유로 인하여 환매일에 환매금액을 지급할 수 없게 된 경우 자산운용회사는 수익증권의 환매를 연기할 수 있습니다. 환매가 연기된 경우 자산운용회사는 지체없이 환매연기 사유 및 수익자총회 개최 등 향후 처리계획을 수익자 및 판매회사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환매연기사유

- ① 투자신탁재산의 매각이 불가능하여 사실상 환매에 응할 수 없는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
  - 가. 현저한 거래부진 등으로 투자신탁재산을 매각할 수 없는 경우
  - 나. 유가증권시장등의 폐쇄·휴장 또는 거래정지 등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투자신탁재산을 매각할 수 없는 경우
  - 다. 천재·지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상황이 발생한 경우
- ② 수익자의 이익 또는 수익자간의 형평성을 해할 우려가 있는 다음 각목의1에 해당하는 경우
  - 가. 투자증권등의 부도발생 등으로 인하여 투자신탁재산을 매각하여 환매에 응하는 것이 수익자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 나. 투자신탁재산의 공정한 평가가 곤란하여 환매청구에 응하는 것이 수익자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 다. 대량의 환매청구에 응하는 것이 수익자간의 형평성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 ③ ①또는②에 준하는 사유로서 금융위원회가 환매연기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유

\*구체적인 사유는 약관 제26조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환매연기기간 중에는 이 투자신탁 수익증권의 발행 및 판매를 할 수 없습니다.

(3) 수익증권의 부분환매

① 자산운용회사는 간접투자재산의 일부가 환매연기사유에 해당하거나 수익자총회(환매연기총회)에서 부분환매를 결의하는 경우 정상자산에 대하여는 수익자가 보유하고 있는 간접투자증권의 지분에 따라 환매에 응할 수 있습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부분환매가 결정된 경우에는 자산운용회사가 부분환매를 결정한 날의 전일을 기준으로 환매연기사유에 해당하는 자산을 정상자산으로부터 분리하여야 합니다.

③ 자산운용회사는 제2항의 규정에 따라 환매연기사유에 해당하는 자산을 정상자산으로부터 분리한 경우에는 환매연기사유에 해당하는 자산만으로 별도의 투자신탁을 설정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수익자는 이 투자신탁 수익권의 보유좌수에 따라 별도의 투자신탁의 수익권을 취득한 것으로 봅니다.

④ 자산운용회사는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정상자산으로 구성된 투자신탁에 대하여는 투자신탁약관 제19조의 규정에 따라 기준가격을 산정하여 수익증권을 발행 및 판매할 수 있습니다.

⑤ 자산운용회사가 부분환매를 결정한 경우에는 관련내용을 지체없이 수익자, 수탁회사 및 판매회사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판매회사는 통지받은 내용을 본지점에 게시하여야 합니다.

3. 이익 분배 등  
관련 유의사항

① 이 투자신탁의 회계기간은 투자신탁의 최초설정일로부터 매 1년간으로 합니다. 다만, 신탁계약 해지시에는 투자신탁회계기간 초일부터 신탁계약의 해지일까지로 합니다.

② 자산운용회사는 신탁계약기간이 종료되거나 투자신탁을 해지하는 경우 지체 없이 수탁회사로 하여금 상환금 등을 판매회사를 경유하여 수익자에게 지급합니다.

③ 판매회사는 수탁회사로부터 인도받은 상환금 등을 지체 없이 수익자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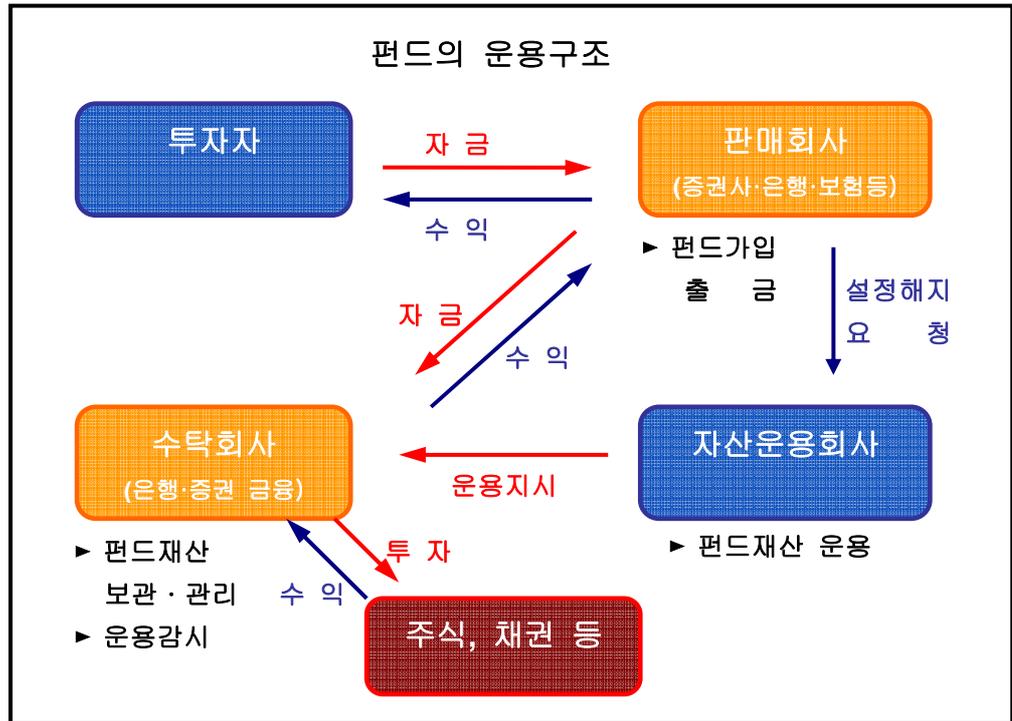
④ 자산운용회사가 투자신탁약관 제42조의 규정에 따라 이 투자신탁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수익자 전원의 동의를 얻어 투자신탁재산인 자산으로 수익자에게 상환금 등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⑤ 자산운용회사는 투자신탁재산인 투자증권 등의 매각지연 등의 사유로 인하여 상환금 등의 지급이 곤란한 경우에는 증권예탁결제원을 통하여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합니다.

⑥ 상환금 등을 수익자가 그 지급개시일부터 5년간 지급을 청구하지 아니한 때에는 판매회사가 취득할 수 있습니다.

⑦ 수탁회사가 상환금 등을 판매회사에게 인도한 후에는 판매회사가 수익자에 대하여 그 지급에 대한 책임을 부담합니다.

## 제 3 부 자산운용회사 및 투자신탁의 관계인에 관한 사항



### 1. 자산운용회사

#### 1. 자산운용회사

회사명	푸르덴셜자산운용(주)
주소 및 연락처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838, Tel. (02)3770-7020

#### 2. 주요업무

##### (1) 주요업무

투자신탁의 설정·해지/투자신탁의 운용·운용지시/ 기준가격산출 업무(위탁)

##### (2) 자산운용회사의 의무와 책임

(선관의무) 투자신탁의 자산운용회사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간접투자자산을 관리하여야 하며, 간접투자자의 이익을 보호하여야 합니다.

(책임) 자산운용회사가 법령, 신탁약관 또는 투자설명서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거나 그 업무를 소홀히 하여 수익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자산운용회사가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관련되는 이사 또는 감사(감사위원회 위원을 포함)에게도 귀책사유가 있는 때에는 자산운용회사는 이들과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요약 대차대조표-단위:억원>

<요약 손익계산서 - 단위:억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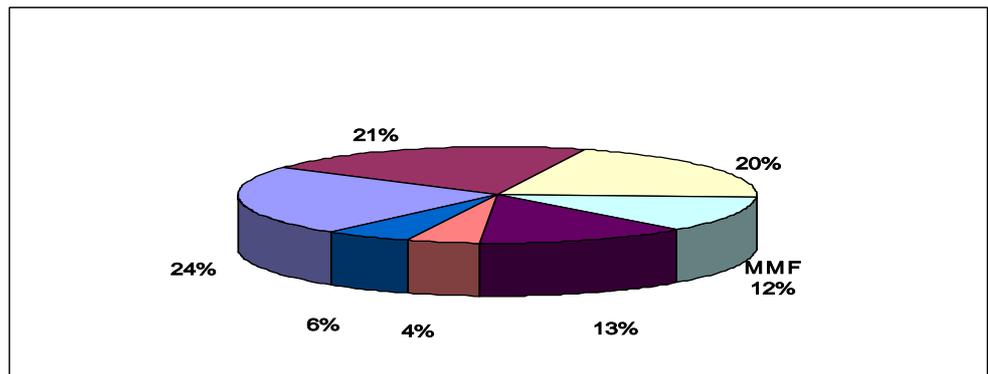
계정과목	2007.3.31.	2006.3.31	계정과목	'06.4.1 ~ 07.3.31	'05.4.1 ~ 06.3.31

고정자산	491	528	영업수익	226	172
유동자산	907	771	영업비용	170	154
<b>자산총계</b>	<b>1,398</b>	<b>1,299</b>	<b>영업이익</b>	<b>56</b>	<b>18</b>
유동부채	55	18	영업외수익	34	8
고정부채	5	4	영업외비용	29	14
<b>부채총계</b>	<b>60</b>	<b>22</b>	<b>경상이익</b>	<b>61</b>	<b>12</b>
자본금	1,500	1,500	당기순이익	60	11
결손금	-162	-222			
자본조정	-0.3	-0.4			
<b>자본총계</b>	<b>1,338</b>	<b>1,277</b>			

4. 운용자산 규모

(2008년 3월 31일 기준, 단위:억좌)

종 류	주식형	혼합형	채권형	MMF	파생	부동산	회사형	재간접	총 계
수탁고	20,961	14,891	16,424	11,846	10,645	-	3,248	3,831	81,846



5. 운용전문인력 (펀드매니저)에 관한 사항

성명	나이	직위	운용현황		주요 운용경력 및 이력	비고
			운용중인 간접투자기구수	운용자산 규모		
김범희	47	그룹장	11	6,078	파생상품운용 ◦현대투자신탁증권 (11년9개월) ◦푸르덴셜자산운용 (8년4개월)	팀운용 (SI팀)
강석재	33	운용역	46	7,996	파생상품운용 ◦푸르덴셜자산운용 (1년7개월)	SI팀

※신탁재산운용은 팀제로 운용하며, 자산운용회사의 사정에 따라 예고없이 펀드매니저가 교체될 수 있습니다.

## II. 판매 회사

### 1. 회사의 개요

판매회사명	주소 및 연락처	설립일
푸르덴셜투자증권	서울 강남구 역삼동 838 ☎ 02-1588-4588 홈페이지: www.pru.co.kr	1982.6.22
우리투자증권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23-4 ☎ 02-768-7000 홈페이지: www.wooriwm.com	1969.1
하나은행	서울 중구 을지로 1가 101-1 ☎ 1588-1111 홈페이지: www.hanabank.com	1971.6
굿모닝신한증권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23-2 ☎ 02-3772-1000 홈페이지: www.goodi.com/ir	1973.4
대신증권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34-8 ☎ 02-769-2000 홈페이지: www.daishin.co.kr	1962.7.27
제주은행	제주도 제주시 이도1동 1349 ☎ 064-720-0200 홈페이지: www.e-jujubank.com	1969.9.19

#### (1) 주요 업무

- 수익증권 판매업무(수익증권의 모집 및 매출업무)· 환매업무
- 수익증권 교부업무 / 이익분배금 및 상환금 지급업무와 원천징수업무
- 각종 장부·서류 등의 비치, 수익자 앞 제공 및 공고 업무 등 기타 법령 및 신탁약관에서 규정한 사항

#### (2) 판매회사의 의무와 책임

(의무)

① 판매회사는 투자자에게 수익증권의 취득을 권유함에 있어 동 투자설명서를 제공하고 그 주요내용을 설명하여야 합니다.

② 판매회사의 임직원 및 취득권유인은 법제57조에 의거하여 제정된 판매행위준칙 등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책임)

판매회사가 법령, 신탁약관 또는 투자설명서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거나 그 업무를 소홀히 하여 수익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판매회사가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관련되는 이사 또는 감사(감사위원회 위원을 포함)에게도 귀책사유가 있는 때에는 자산운용회사는 이들과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 III. 수탁회사

#### 1. 회사의 개요

회사명	우리은행
주소	서울시 중구 회현동1가 203
전화번호	(02)2002-3000
영업점포 현황	서울지점: 422/ 지방지점: 부산지점 등 429개
홈페이지	http://www.wooribank.com

#### 2. 주요업무

##### (1) 주요업무

투자신탁재산의 보관 및 관리 / 자산운용회사의 운용지시에 따른 자산의 취득 및 처분의 이행, 환매대금 및 이익금의 지급 / 자산운용회사의 투자신탁재산 운용지시 등에 대한 감시 / 간접투자재산에서 발생하는 이자·배당·수익금·임대료 등의 수령 등

##### (2) 수탁회사의 의무와 책임

(의무)

① 수탁회사 간접투자자를 위하여 법령, 신탁약관, 투자설명서, 신탁계약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로서 그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합니다.

② 수탁회사는 자산운용회사의 운용지시가 법령, 신탁약관 또는 투자설명서에 위반되는지의 여부에 대하여 그 사항을 확인하고 위반이 있는 경우에는 자산운용회사에 대하여 당해 운용지시의 철회 변경 또는 시정을 요구하여야 합니다.

③ 수탁회사의 확인사항

투자설명서가 법령 신탁약관에 부합하는지의 여부 / 간접투자재산의 평가가 공정한지의 여부 / 기준가격 산출이 적정한지의 여부 / 운용지시 시정요구 등에 대한 자산운용회사의 이행내역 / 투자신탁재산별 자산배분내역 및 배분결과

(책임)

수탁회사가 법령, 신탁약관 또는 투자설명서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거나 그 업무를 소홀히 하여 수익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수탁회사가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관련되는 이사 또는 감사(감사위원회 위원을 포함)에게도 귀책사유가 있는 때에는 자산운용회사는 이들과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 IV. 일반사무관리회사

#### 1. 회사의 개요

회사명	(주)SC제일펀드서비스
주소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23-2
전화번호	(02) 2014-2000
회사연혁	1999.11.3 설립

#### 2. 주요업무

##### (1) 주요업무

기준가격 계산에 관한 업무 및 보수인출 등의 업무를 수행합니다

##### (2) 일반사무관리회사의 책임

(의무)

①금융위원회가 정한 회계기준에 따라 정확하고 공정하게 기준가격을 산정하여야 합니다.

②투자회사 재산에 관한 매분기의 영업보고서를 금융위원회 및 자산운용협회에 제출 하여야 합니다.

③투자회사의 결산기마다 결산서류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책임) 일반사무관리회사가 법령, 신탁약관 또는 투자설명서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거나 그 업무를 소홀히 하여 수익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 V. 채권평가회사

### 1. 회사의 개요

구 분	한국채권평가	나이스채권평가	Kis 채권평가
주소	서울시 종로구 세종로 211 광화문빌딩 9층	서울시 종로구 인사동 43번지 대일빌딩 15층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35-4번지 한국화재보험협회 빌딩 4층
전화	02)399-3350	02)739-3590	02)3215-1400
설립일	2000.5.	2000. 6.	2000. 6.

### 2. 주요업무

#### (1) 주요업무

채권시가평가 정보 제공, 채권 관련 자료 및 분석도구 제공, 간접투자재산에 속하는 채권 등 투자증권 및 파생상품의 가격을 평가하고 이를 이 투자신탁의 자산운용회사 및 사무관리회사에 제공 등

## 제 4 부. 수익자 권리 및 공시에 관한 사항

### I. 수익자의 권리

#### 1. 수익자 총회 및 의결권

##### (1) 수익자총회의 구성 및 권한

이 투자신탁에는 전체 수익자로 구성되는 수익자 총회를 둡니다. 이 때, 특정 종류의 수익증권 수익자에 대하여만 이해관계가 있는 때에는 그 종류의 수익자로 구성되는 수익자총회를 개최할 수 있습니다.

##### (2) 수익자총회의 소집 및 서면에 의한 의결권 행사

- 수익자총회는 수탁회사 또는 발행된 수익증권총좌수의 100분의 5 이상을 보유한 수익자의 요청으로 자산운용회사가 소집하며 자산운용회사의 본점소재지 또는 이에 인접한 지역에 소집합니다.
- 수익자는 수익자총회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서면에 의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수익자는 서면에 의결권행사의 내용을 기재하여 수익자총회의 회의

일 전일까지 자산운용회사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3) 수익자총회 의결사항**

- 다음에 해당하는 사항의 변경은 수익자총회의 의결에 의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자산운용회사는 수익자총회의 소집통지를 증권예탁결제원에 위탁하여야 합니다.
- 자산운용회사, 수탁회사 등이 받는 신탁보수 또는 그 밖의 수수료의 인상/수탁회사의 변경/투자신탁계약기간의 변경/투자신탁종류의 변경/자산운용회사의 영업양도/환매금지투자신탁으로의 변경/주된 투자대상의 변경/환매대금 지급일의 연장
- 자산운용회사는 신탁계약기간이 종료되거나 투자신탁을 해지하는 경우 지체없이 수탁회사로 하여금 투자신탁원본의 상환금 및 이익금(이하 “상환금등”이라 한다)을 판매회사를 경유하여 수익자에게 지급하며, 판매회사는 수탁회사로부터 인도받은 상환금등을 지체없이 수익자에게 지급합니다.
- 자산운용회사가 이 투자신탁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수익자 전원의 동의를 얻어 투자신탁재산인 자산으로 수익자에게 상환금등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자산운용회사는 투자신탁약관 제42조의 규정에 따라 이 투자신탁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수익자 전원의 동의를 얻어 투자신탁재산으로 수익자에게 상환금등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 자산운용회사는 투자신탁재산인 투자증권등의 매각지연등의 사유로 인하여 상환금등의 지급이 곤란한 경우에는 증권예탁결제원을 통하여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합니다.
- 수익자가 이익분배금 또는 상환금등의 지급개시일로부터 5년간 지급을 청구하지 아니한 때에는 판매회사가 취득할 수 있습니다.
- 수탁회사가 이익분배금 또는 상환금등을 판매회사에게 인도한 후에는 판매회사가 수익자에 대하여 그 지급에 대한 책임을 부담합니다.
- 수익자는 자산운용회사 또는 판매회사에 대하여 영업시간 내에 이유를 기재한 서면으로 당해 수익자에 관련된 투자신탁재산에 관한 장부 서류의 열람이나 등본 또는 초본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으며, 자산운용회사 또는 판매회사는 정당한 사유없이 이를 거절 하지 못합니다.
- 수익자가 열람이나 등본 또는 초본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는 장부·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간접투자재산명세서 / 간접투자증권기준가격대장 / 재무제표 및 그 부속명세서 / 자산매매거래내역서
- 자산운용회사가 법령, 약관 또는 투자설명서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거나 그 업무를 소홀히 하여 수익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 자산운용회사가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관련되는 이사 또는 감사(감사위원회의 위원을 포함합니다)에게도 귀책사유가 있는 때에는 이들과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2. 잔여재산분배**

**3. 장부·서류의 열람 및 등·초본 교부청구권**

**4. 손해배상 책임**

5. 재판관할

- 수익자가 소송을 제기하는 때에는 수익자의 선택에 따라 수익자의 주소지 또는 수익자가 거래하는 자산운용회사 또는 판매회사의 영업점포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수익자가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비거주자인 경우에는 수익자가 거래하는 자산운용회사 또는 판매회사의 영업점포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제기하여야 합니다.

6. 기타 수익자의 권리보호에 관한 사항

- 이 상품의 신탁약관 등 상품에 대한 추가정보를 원하시는 고객은 이 상품의 자산운용회사 또는 판매회사에 자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이 상품의 기준가 변동 등 운용실적에 관해서는 이 상품의 자산운용회사 또는 판매회사에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이 상품의 투자설명서 및 기준가변동 등은 자산운용협회에서 열람, 복사하거나, 자산운용협회 인터넷([www.amak.or.kr](http://www.amak.or.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II. 공시

1. 정기공시 및 보고서

자산운용회사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매 영업연도의 결산일로부터 일정 기간 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시하여야 합니다.

- 조직 및 인력에 관한 사항/재무 및 손익에 관한 사항/자금조달 및 운용에 관한 사항/건전성, 수익성 및 생산성 등을 나타내는 경영지표에 관한 사항/그 밖에 자산운용회사의 경영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1) 영업보고서

자산운용회사는 간접투자자산에 관한 영업보고서를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 다음의 서류로 구분하여 작성하고, 매 분기 종료 후 20일까지 이를 금융위원회 및 자산운용협회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투자신탁의 설정현황 또는 투자회사의 자본변동상황 / 투자신탁재산의 운용현황과 수익증권의 기준가격표 / 의결권공시대상법인에 대한 의결권의 행사여부 및 그 내용(의결권을 행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포함합니다)이 기재된 서류

(2) 자산운용보고서

자산운용회사는 자산운용보고서를 작성하여 수탁회사의 확인을 받아 3월에 1회 이상 당해 투자자에게 제공하여야 합니다. 자산운용 보고서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판매회사를 통하여 우송하여야 하나, 간접 투자자가 전자우편을 통하여 자산 운용보고서를 수령한다는 의사표시를 한 경우에는 전자우편에 의하여 제공할 수 있습니다.

(3) 수탁회사보고서

수탁회사는 투자신탁의 회계기간 종료 후 2월 이내에 법에서 규정한 수탁회사보고서를 수익자에게 제공하여야 합니다.

(4) 약관변경

자산운용회사는 신탁약관을 변경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다음 각호의 방법으로 공시하여야 합니다.

- 수익자총회의 의결에 의하여 신탁약관을 변경한 경우: 증권예탁결제원을 통한 모든 수익자에의 통지
- 수익자총회의 의결에 의하지 않고 신탁약관을 변경한 경우: 신탁약관 제5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일간신문 및 컴퓨터통신을 통한 1회 이상 공고

신탁약관 제49조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신탁약관의 단순한 자구수정 등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거나 법령 또는 금융감독원장의 명령에 따라 신탁약관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자산운용회사 및 판매회사의 영업점포 내에 1월 이상 게시하여야 합니다.

(5) 기타 장부·서류

자산운용회사·수탁회사·판매회사 및 일반사무관리회사는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업무에 관한 장부 및 서류를 작성하여 본점 및 지점에 비치하거나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공시하여야 합니다.

2. 수시공시

(1) 수시공시 등

자산운용회사, 수탁회사 또는 판매회사가 수익자에 대하여 일간신문에 공고를 하는 때에는 한국경제신문에 공고하되, 2 이상의 일간신문에 공고하는 때에는 매일경제신문에도 공고합니다.

자산운용회사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을 그 사유발생 후 지체없이 자산운용회사(<http://www.prudentialfund.com>), 판매회사 및 자산운용협회(<http://www.amak.or.kr>)의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자산운용회사, 판매회사의 본지점 및 영업소에 게시하거나 전자우편을 이용하여 수익자에게 통보합니다.

- 운용전문인력의 변경 / 환매연기 또는 환매재개의 결정 및 그 사유 / 법령이 정하는 부실자산이 발생한 경우 그 내역 및 상각율 / 수익자총회의 의결내용 / 신탁약관 또는 투자설명서의 변경. (단, 법령의 개정 또는 금융감독원장의 명령에 따라 신탁약관을 변경하거나, 단순한 자구수정 등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는 제외) / 자산운용회사의 합병, 분할 또는 영업의 양도양수 / 기준가격을 잘못 계산하여 이를 수정하는 경우 그 내용 등의 법령이 정하는 사항

(2) 의결권 행사

자산운용회사는 간접투자재산인 주식의 의결권을 행사하는 경우 의결권행사내용 등을 공시하여야 합니다.

의결권행사에 관한 공시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합니다.

- 의결권을 행사하고자 하는 주식을 발행한 법인이 증권거래법에 의한 주권상장법인 또는 코스닥상장법인인 경우에는 주주총회일 5일전까지 유가증권시장 또는 코스닥시장을 통하여 의결권을 행사하고자 하는 내용을 공시할 것
- 의결권을 행사하고자 하는 주식을 발행한 법인이 증권거래법에 의한 주권상장법인 또는 코스닥상장법인이 아닌 경우에는 시행령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공시하여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할 것

838 ( )135 - 982

Prudential Financial is a service mark of The Prudential Insurance Company of America, Newark, NJ, and its affiliates. Prudential Asset Management Co., Ltd. All rights reserved.

: 02) 3770 - 7020

: [www.prudentialfund.com](http://www.prudentialfund.com)



참고 - 펀드 용어정리

용 어	내 용
개방형(간접투자기구)	투자자가 원할 시 언제든지 환매가 가능한 펀드입니다.
금리스왑	금리스왑은 금리상품의 가격변동으로 인한 손실을 보전하기 위해 금융 기관끼리 고정금리와 변동금리를 일정기간동안 상호교환하기로 약정하는 거래를 말합니다. 이때 원금은 바꾸지 않고 서로 이차 지급의무만을 바꾸며, 금리스왑은 보통 금리상승에 따른 위험을 줄이기 위해 주로 활용됩니다.
기준가격	펀드의 매입 환매 및 분배시 적용되는 가격으로, 기준가격의 산정은 전일의 펀드 순자산총액을 전일의 펀드 잔존 수익증권 수량으로 나누어 1,000을 곱한 가격으로 표시하고,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합니다
레버리지효과	파생상품을 이용한 고위험의 투자방법으로 적은 투자금액으로 큰 수익을 얻을 기회를 제공하기도 하지만, 주가가 예상과 다른 방향으로 움직이면 큰 손실을 초래하기도 합니다.
보수	투자신탁의 운용 및 관리와 관련된 비용입니다. 다시 말해 재산을 운용 및 관리해준 대가로 고객이 지불하는 비용입니다. 이는 통상 연율로 표시되며, 신탁보수에는 운용보수, 판매보수, 수탁보수, 일반사무관리 보수 등이 있습니다. 보수율은 상품마다 다르게 책정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선물환거래	장래의 일정기일 또는 일정기간 내에 일정액의 외국통화를 일정한 환율로 매매할 것을 미리 약속하는 거래로 환해지의 수단으로 자주 이용됩니다.
설정	신탁약관에 의거, 수탁회사와 신탁계약을 체결한 후 일정단위의 신탁금을 수탁회사에 납입하는 것을 설정이라고 하며, 신규설정과 추가설정이 있습니다.
성과보수	현행 법은 불특정다수의 일반 투자자를 대상으로 판매하는 펀드(공모펀드)의 경우 자산운용회사가 펀드의 성과에 따라 추가적 보수(성과보수)를 수취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소수의 투자자를 대상으로 하는 사모펀드 혹은 투자일임계약의 경우 약관(계약)에 따라 성과보수의 수취가 가능합니다. 펀드매니저가 성과보수가 있는 사모펀드·투자일임계약과 성과보수가 없는 공모펀드를 함께 운용함에 따라 성과보수가 있는 펀드 등의 투자수익을 높이기 위해 더 많은 투자노력을 기울이는 등 이해상충발생소지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수익자총회	펀드의 수익자 회의를 일컫는 말입니다. 2003년 10월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이 제정되면서 수익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도입된 개념입니다. 수익증권 총수의 100분의 5 이상을 보유한 수익자가 소집을 요청하는 경우 1개월 이내에 자산운용회사가 소집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총 수익증권 수의 과반수를 보유하는 수익자의 출석으로 열리는데, 상정된 안건은 출석한 수익자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과 수익증권 총수의 3분의 1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됩니다. 만약 이 의결에 반대하는 수익자는 총회가 개최되기 전에 서면으로 반대의를 통지하고 20일 이내에 수익증권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수익증권	증권거래법상 유가증권의 일종으로 자산운용회사가 일반 대중으로부터 자금을 모아 펀드를 만들 때 이 펀드에 투자한 투자자들에게 출자비율에 따라 나눠주는 권리증서를 말합니다. 투자신탁에 가입(매입)한다는 것은 이 수익증권을 산다는 의미입니다
수탁고	펀드에 유치된 자금의 양, 즉 자산운용회사가 고객들의 자금을 맡아 운용하는 규모를 지칭합니다.
신주인수권부 사채	사채권자에게 사채 발행 이후에 기채회사가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미리 약정된 가격에 따라 일정한 수의 신주 인수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된 사채입니다.
원천징수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지급할 때, 그 지급자가 그 지급받는 자가 부담할 세액을 미리 국가를 대신하여 징수하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근로자가 월급을 받을 때 월급(소득)에서 발생하는 세금을 차감한 금액을 받게 됩니다. 이는 월급을 지급하는 회사가 국가를 대신해서 미리 세금을 징수하고 세금 납입일(통상 매달 10일)에 일괄적으로 국가에 납부하기 때문입니다.
자산운용협회 펀드코드	상장주식의 경우 회사명 또는 코드번호 6자리를 활용하여 수익자들이 쉽게 공시사항을 조회·활용할 수 있는 것처럼 펀드 또한 자산운용협회가 부여하는 5자리의 고유 코드가 존재하며, 펀드명 뿐만 아니라 이러한 코드를 이용하여 펀드의 각종 정보에 대한 조회가 가능합니다.

자산유동화증권	자산유동화증권이란 기업의 부동산을 비롯한 여러가지 형태의 자산을 담보로 발행된 채권을 말하며, 기업의 입장에서는 유동성이 떨어지는 부실채권이나 직접 매각하기 어려운 부동산 등 담보로 맡기고 ABS를 발행해 쪼개서 판매함으로써, 자금 조달의 용이성을 제고할 수 있습니다.
전환사채	특수사채의 일종으로, 사채로 발행되나 일정 기간 이후에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권리가 주어지는 사채를 말합니다.
종류형(간접투자기구)	통상 멀티클래스펀드로 불리웁니다. 멀티클래스 펀드란 하나의 펀드 안에서 투자자 그룹(클래스)별로 서로 다른 판매보수와 수수료 체계를 적용하는 상품을 말합니다. 보수와 수수료의 차이로 클래스별 기준가격은 다르게 산출되지만 각 클래스는 하나의 펀드로 간주돼 통합 운용되므로 자산운용 및 평가 방법은 동일합니다.
주식워런트	주식워런트는 특정 주식을 미리 정한 가격에 살 수 있는 권리증서로, 만기에 특정종목의 주가나 주가지수를 미리 정한 가격에 사고 팔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된 상품으로 옵션과 유사합니다. 살 수 있는 상품은 `콜워런트`, 팔 수 있는 상품은 `풋 워런트`입니다.
주식형(간접투자기구)	약관(정관)상 주식에 간접투자재산의 60%이상을 투자하는 펀드입니다.
채권형(간접투자기구)	약관(정관)상 운용대상에 주식에 편입되지 않고 채권에 간접투자재산의 60% 이상을 투자하는 펀드입니다.
혼합형(간접투자기구)	채권 및 주식 등에 주로 투자하는 펀드로서 약관(정관)상 주식에 간접투자재산의 50% 이상 투자 가능한 경우 주식혼합형, 50% 미만 투자 가능한 경우 채권혼합형으로 분류됩니다.
증권투자신탁	간접투자재산의 40% 이상을 투자증권에 투자하는 펀드입니다. 주식형·채권형·혼합형 펀드가 이에 해당합니다.
단기금융간접투자기구	유가증권의 운용비용 등에 대한 제한이 없고, 자산을 주로 단기성자산(콜론,CP,CD등)으로 운용하는 펀드입니다.
파생상품간접투자기구	간접투자재산의 10% 이상을 파생상품에 투자하는 펀드입니다.
재간접투자기구	간접투자재산의 50% 이상을 다른 간접투자기구(펀드)가 발행한 간접투자증권에 투자하는 펀드입니다.
추가형(간접투자기구)	기 설정된 펀드에 추가설정이 가능한 펀드입니다.
단위형(간접투자기구)	일정 모집기간 내에만 가입이 가능한 펀드입니다.
판매수수료	투자자가 펀드 매입 시, 판매회사에 일회적으로 지불하는 수수료입니다. 이는 상품에 대한 취득 권유 및 설명, 투자설명서 제공 등에 수반되는 비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수수료 지불 시점에 따라 선취판매수수료와 후취판매수수료로 구분합니다.
해지	투자신탁(펀드)의 신탁기간이 종료되거나, 스팟펀드처럼 약속한 수익률에 도달할 경우 펀드의 자산을 모두 처분, 투자자들에게 원금과 수익금을 나눠주는 법적 절차를 말합니다.
환매	만기가 되기 전에 맡긴 돈을 되찾아 가는 것을 환매라고 합니다. 현재 우리나라가 채택하고 있는 투신제도상 고객이 중도인출을 요구할 경우 자산운용사가 이를 받아들여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단위형(폐쇄형) 상품의 경우 일정기한까지 중도해약을 금지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환매수수료	계약 기간 이전 중도에 펀드를 환매할 시 일정한 벌칙금 형식으로 투자자에게 일회적으로 부과하는 수수료입니다. 이는 펀드 운용의 안정성과 펀드 환매 시 소요되는 여러 비용을 감안하여 책정되며 부과된 수수료는 다시 펀드 재산에 편입되게 됩니다.
환매조건부채권	금융기관이 일정 기간 후 확정금리를 보태어 되사는 조건으로 발행하는 채권을 말합니다.
환헤지	해외펀드는 대부분 달러로 주식을 사들이기 때문에 도중에 환율이 떨어지면 환차손(환율 변동에 따른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외에 투자하는 펀드들은 선물환 계약(미리 정해놓은 환율을 만기 때 적용하는 것) 등을 이용하여 환율 변동에 따른 손실 위험을 제거하는 환헤지 전략을 구사하기도 합니다.

투자설명서 교부 및 주요내용 설명 확인서

투자신탁 명칭 : 푸르덴셜알파채권혼합투자신탁 1호

판매일 : \_\_\_\_\_

판매회사 및 점포명 : \_\_\_\_\_

판매직원 : 직위 \_\_\_\_\_ 성명 \_\_\_\_\_ 서명 또는 (인)

투자자 확인 사항

◦ 투자자께서는 투자설명서를 제공받고 그 주요내용에 대한 설명을 들으신 후 아래의 내용을 밑줄 친 곳에 똑같이 자필로 기재하고 서명 또는 기명날인 하시기 바랍니다.

**\* 투자설명서를 제공받고 그 주요내용을 설명 들었음.**

투자설명서를 \_\_\_\_\_ 그 주요내용을 \_\_\_\_\_.

년 월 일

성명 \_\_\_\_\_ 서명 또는 (인)